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2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순서”를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거행한다”를 “행한다”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임기초”를 “임기 초”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 제목 “(의장, 부의장의 선거)”를 “(의장·부의장의 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이상인 경우에는”을 “이상이면”으로, “함으로서”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을 때에는”을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를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

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의장,부의장의 사임)”을 “(의장·부의장의 사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 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회, 산회”를 “정회·산회”로 한다.

제14조의1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①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개시일시”를 “개의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되”를 “협의하되,”로, “이를 결정한다”를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은”을 “의장이”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동의에 따라”를 “동의로”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의안의 제출, 발의)”를 “(의안의 제출·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를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의 2(입법예고) 제1항 중 “전문”을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로, “심사하게 하고, 그”를 “그”로, “후에는”을 “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

만”을 “다만,”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소관”을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여”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로, “아니한 때에는”을 “아니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의안, 동의의 철회)”를 “(의안·동의의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본회의,”를 “본회의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의안”을 “제출의 의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2이상의”를 각각 “2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취지설명”을 각각 “취지 설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중 “조항, 문구, 숫자”를 “조항·문구·숫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허가할”을 “허가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위반한다고”를 “위반된다고”로, “위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질의 · 보충 · 반론 · 의사진행발언”을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그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개회, 폐회”를 “개회·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의, 회의중지, 산회”를 “개의·회의중지·산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배정, 변동”을 “배정·변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을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발언보충서”를 “발언보충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날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날인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후단 중 “그러나”를 “그러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람, 복사”를 “열람·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재, 복사하게”를 “전재·복사하게”로 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회의중”을 “본회의 중”으로 한다.

제55조의1제1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제56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질의, 토론, 축조”를 “질의·토론·축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시간등”을 “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1문 1답 방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를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로,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수도”를 “수”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있다”를 “없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개의, 회의중지”를 “개의·회의중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 진술인”을 “공무원·진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서는”을 “위원회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날인한다”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 자료”를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로, “심사, 감사”를 “심사·감사”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출되는”을 “제출된”으로 한다.

제71조 중 “예결 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심사케한”을 “심사하게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부할

때”를 “회부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회의개시전”을 “회의개시 전”으로, “대리 출석 답변하게”를 “대리 출석·답변하게”로 한다.

제74조제4항 본문 중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구청장에게”를 “의원이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서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있는”을 “있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전단 중 “출석, 발언할”을 “출석·발언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석, 발언하게”를 “변명하게”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를 “신문·잡지·간행물·기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 문서등”을 “자료문서 등”으로,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녹음·녹화·촬영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꺽연”을 “흡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주소, 성명, 직업및”을 “주소·성명·직업 및”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러한 사람으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8조제2호 중 “모자, 외투”를 “모자·외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녹음·녹화·촬영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란등”을 “소란 등”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녹음, 녹화등)”을 “(녹음·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녹음, 녹화, 촬영”을 “녹음·녹화·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녹음등”을 “녹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보존등”을 “기록보존 등”으로, “녹음, 녹화, 촬영”을 “녹음·녹화·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녹음등”을 “녹음 등”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윤리 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제83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제92조제1항 전단 중 “받은날 또는 제91조”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중 “제91조”를 각각 “같은 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상자”를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심문 변명)”을 “(심문 및 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 의원”을 “관계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2017. 4. 11.)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